

특

점

자 조 금 제 도 自 助 金 制 度

CHECK OFF S

○ 자조금이란 생산자가 종사하는 분야의 자체산업발전을 위해 문제점을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비용을 본인 스스로가 부담해 이룩 하고자하는 목적달성을 위한 기금이다.

축산에 대한 자조금제도는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사람끼리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이익집단을 형성, 단체로 활동하며 유통소비교육등 전산업의 합리화를 도모코처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본호에서는 자조금의 목적과 성격 또한 의견을 싣고 2 회에서는 필요성, 제도화 운영방법, 예상문제점을 3 회에서는 실재를 게재한다.

편집자주

■ 집 필 진 ■

본 회

감사
이사

진 회
채 박

두 인
윤 재

협 식
석 호

순천승주지회장
삼주지회장

목적과 성격

1. 개 요

현대사회는 조직의 사회이다. 조직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구성된 사회적단위(社會的單位)이다. 사람들은 조직속에서 살고 조직에 참여하거나 조직을 관리하면서 조직의 영향을 받고 살아간다.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수록 조직이 인간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커지고 조직과 결부되는 문제도 그만큼 심각해진다. 이러한 조직내에서 교호 작용(交互作用) 및 상호의존(相互依存) 관계를 이루는 집단이 있다. 집단 가운데 특정한 공통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활동하려는 사람들의 집군(集群)을 이익집단(利益集團) 또는 관심집단(關心集團)이라 한다.

이익집단은 어떤 경제, 사회 및 정치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화된 집단이다. 예를 들면 노동조합, 협동조합, 협회, 상공회의소, 농업회의소, 의사회, 약사회, 교원연맹, 여성단체 등이 모두 이에 해당하고 당해집단의 길항력(拮抗力)을 배양하여 복잡한 현대의 기능사회에서 그 집단에 부여된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알맞는 대가도 보장 받으려는 자구적공조조직(自救的共助組織)이다. 다시 말하면 이익집단은 현대의 다원사회에서 지배와 피지배계층간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개별집단간의 갈등을 완충케하는 중도조직(中道組織)이라 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집단을 막론하고 목적인 바의 활동을 전개하는데에는 반드시 비용이 필요하게 된다. 그 비용은 특정집단의 이익성취를 위한 사적활동비이므로 마땅히 그 집단의 구성원이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비용의 조달방법이 공평하지 못하고 구성원의 부담의사가 소극적이거나 사용이 정당하지 않을 때 그 집단은 당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국민경제(國民經濟)의 발전과 복지증진상(福祉增

進上)의 필요에 의하여 결정하는 이익집단(예 :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활동비(조합비) 수준과 사용범위를 법적으로 규정하기도 한다.

자조금이란 광의(廣義)로는 이익집단이 스스로 조달하는 여러형태의 자조금재원을 통틀어 일컫는다. 그러나 협의(狹義)로는 법적규정 또는 집단의 결의로써 의무적 또는 자발적으로 부과수금(賦課收金)하여 특정목적에만 사용한 제도적인 기금(基金)을 말한다.

본고에서는 협회의 문제만을 다룬다. 그중에서도 농업 특히 축산부문의 생산자 연관되는 체크오브기금(자조금)을 대상으로 하여 살펴본다.

2. 목 적

자조금은 목적기금이다. 다시 말하면 자조금이 의도하는 분명한 목적 즉 그집단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한다. 자조금은 품목별 이익집단이 어떤 지정된 목적에 쓰기 위하여 모은 산업의 기금이다.

그러므로 그 산업이 지향하는 바에 따라 자조금의 설치 및 사용목적이 다르게 된다. 한가지 공통적인 목적이라면 어느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생산자 개개인 또는 산업의 어느 한 부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업전체의 문제일 경우 산업차원에서 이 문제를 공동으로 풀어가기 위하여 조성, 사용되는 것이 자조금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범위에 속하는 주요 목적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자구대책

농업생산자는 숫자가 많고 개별경영규모가 작은 경제적 약자임에 반하여 거래 대상인 농기업(農企業 : 자재공급, 가공, 유통 등)은 숫자가 적고 기업경영을 하는 경제적 강자이므로 생산자는 이들과의 협상관계에서 항상 불리한 경

생산자는 산업의 주인적인 역할과 스스로 살아남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기때문에 그 자구를 위한 활동에 쓰여지는 기금이 자조금

쟁입장에 놓이게 된다. 따라서 1차산업 종사자는 연관2·3차산업과의 거래교섭력을 높이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농산물은 수급과 가격이 불안정하고 생산자의 소득도 불확실하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되고 있다. 생산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가 되어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참여하는 일에 적극성을 가져야 한다. 즉 생산자는 산업의 주인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안된다.

고도산업사회에서 농업은 타산업에 비하여 생산성과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때문에 그대로 방치해두면 사양산업(斜陽産業)이 되고만다. 따라서 농업은 급변하는 주변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스스로가 살아남는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된다. 농업생산자의 자구대책은 현대산업사회에서 불가결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자구를 위한 활동에 필요한 기금이 바로 자조금이다.

2) 생산자의 조직화(組織化)

농업생산자는 자구를 위한 이익집단의 구실을 다하기 위하여 우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많은 생산자의 힘을 한데 모아 조직화한다는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생산자의 조직에는 협동조합이 있다. 특정생산자가 어떤 경제활동을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모인 단체가 바로 협동조합이다. 이 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는 조합원인 동시에 산업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협동조합이 잘 조직되어 제 역할을 다하면 조합원 개인의 이익은 물론 그 산업전체의 발전에도 도움을 준다. 산업을 대표하는 전국 생산자조직에는 여

러 형태가 있다. 그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이 일반적으로 협회(協會)라고 불리는 조직이다. 이 협회는 그 산업의 공동관심사를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는 것이 대부분이며 경제사업에는 직접 관여치 않는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조합원은 다시 협회의 회원이 되어 그 산업을 대변하는 이익집단(利益集團)의 일원으로도 기여하는 것이다.

자조금은 생산자의 조직화를 촉진하는데 쓰인다. 자조금을 부담하는 생산자는 산업조직의 필요성을 알게되어 더욱 적극적으로 조직에 참여하게 된다.

3) 공동위험부담

자조금의 또하나 목적은 산업내외에 개재하고 있는 위험을 공동으로 부담한다는데 있다. 그것은 농업이 갖고 있는 위험과 불확실성뿐 아니라 근대산업사회에서 농업이 갖는 산업적 위험까지도 포함한다. 오늘날의 농업은 많은 대외적 압력을 받고 있다. 투자와 생산효율문제는 가장 심각한 압력대상이라할 수 있다. 이러한 외적압력에 대한 위험을 공동으로 대처하는데 자조금은 유효하게 쓰여질 수 있다. 농업내부의 경제적 압력도 나날이 더해 감을 볼 수 있다. 생산위주의 단계가 지나면 유통의 시대가 찾아오는것이 그 하나의 예이다. 농산물 유통문제는 사기업에만 맡길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총수요와 총공급을 연결한다는 측면에서 다루어야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은 산업을 총체적으로 보는 관점에서 조정해야하는 산업의 공동위험인것이다. 자조금은 이 위험을 헤치고 나가는 방향설정과 견제에 사용될 수 있는 재

원(財源)이다. 산업에 민주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사회의 농업문제는 그 발전과정에 비민주적요소가 장애요인으로 크게 대두되기 쉽다는 위험이 있다. 이는 산업발전을 뒷받침하지 못하는 제반 법규와 행정명령, 그리고 정책형성과정에 이익집단의 의사가 올바르게 반영되지 않는데서 오는 위험인 것이다. 산업의 자본기금은 산업의 민주화 촉구에도 큰 몫을 할 수 있다.

4) 산업촉진(産業促進)

근대산업사회에서 농업이 생존, 발전하려면 다가오는 문제점을 적시에 확인, 조정하여 생산, 유통, 소비가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한다. 농업이 상업농과 공업농단계에 들어서면 생산보다는 유통, 유통보다는 소비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경향을 나타내게 된다. 농업의 당면문제는 철저히 조사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적절한 해결대책을 찾아 농업발전의 병목현상을 없애는것이 당연하다. 자조금은 이러한 산업의 문제를 확실히 규명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기금이다.

유통개발은 각 기능이 능률화와 산업전체의 합리적조정이 함께 이루어질때 더욱 효과적으로 성취된다. 산업측면에서 유통문제를 다루는데 산업기금인 자조금은 아주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는 재원이다.

오늘날 산업촉진의 표적은 소비촉진에 모아지고 있다. 농산물은 대부분이 최종소비상품인 먹거리이기 때문에 소비가 원만히 이루어져서 수요가 계속적으로 창출되어야 비로소 유통과 생산의 필요가 생기는 산업이다. 그런데 농산물은 생산자 상표가 붙여질 수 없고 가공 유통단계에 들어가야만 상표가 가능하므로 상품촉진 이전의 상품촉진도 중요하다. 개별생산자는 상품촉진을 할 능력이 없는 까닭에 모두가 모인 자조금으로 일괄하여 성장촉진을 하는것이

자조금의 용도는 생산보다는 유통보다는 소비문제가 더욱 심각해져 이것을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하여 해결을 하는데 쓰이는 비용

다.

농업도 산업의 위치에서 생산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높여야함은 필연적인 과제인데 그 구조적인 특성으로인하여 산업 전체에서 종합, 촉진해야할 일들이 많은 것이다. 이와 같이 산업구성원 개개인이나 어느 부분이 개별적으로 담당하기 어려운 일들을 위해 자조금은 산업촉진기금으로 사용될수 있다.

5) 정책지원

발전하는 경제의 농업정책은 그 역할이 매우 크다. 개별생산자가 기업적수준이 아니고 농산물유통과 소비도 합리성을 결여하기 쉬워 수급의 불균형에서 오는 가격과 소득의 불안문제가 언제나 제기되기 때문에 이의 조정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게 된다.

전근대적 형태의 농업정책은 정부주도하의 지원대책이 그 골자를 이루는것이 상례이다. 그러나 일단 상업농 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정부가 모든 산업정책을 혼자 다룰수가 없게 된다. 따라서 산업자체의 자유경쟁적 시장기능에 맡기는 원칙 밑에서 정부가 해야할일만을 찾아 정책을 세워나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소위 관주도에서 민주도로 전환하는 정책이 바로 이 때문이며 비농업분야에서는 매우 활발하게 전개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농업정책은 말할 것도 없이 먹거리 생산을 위한 생산자 정책인 동시에 소비에 대한 소비자 정책 및 유통에 관련된 제반 조정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농업정책은 산업의 현실

자기산업을 스스로가 육성 발전시킨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생산자가 직접 참여할수 없
기 때문에 자조금을 납부해 목적달성 하는 것

에 입각하여 생산자이의 측면과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형성(形成), 결정(決定), 집행(執行), 평가(評價)되어야 한다. 그러나 정부주도에서 산업주도로 정책방향이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는 정책이 결정, 집행만 될뿐이고 형성, 평가되는 절차가 무시된다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정책입안자의 편의에 따라 정책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책은 산업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책이 결정되기까지는 이해를 달리하는 많은 집단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절차 즉 민주적 정책형성과정을 밟아야 한다.

농업생산자는 농업정책의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산업의 이익을 주장할수 있어야 한다. 그리하여 산업실상에 알맞는 정책이 만들어지고 또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필요가 있다. 이러한 활동을 위해서도 자조금이 필요하다.

6) 산업(産業)의 장기발전 주도(主導)

농업은 국민에게 먹거리를 공급해주고 종사자에게 소득원을 제공해주는 산업이다. 그 기능이나 중요성, 산업의 구조적 특징으로 보아서도 장기적인 발전대책을 필요로하는 업종이다. 국내외적 여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잔존하기 위해서도 장기적방향 설정과 단기적대책이 적절하게 세워져야 한다.

구조개선 측면에서 보는 농업은 매우 신축적이지 아니고 많은 시간을 소요로하는 불리한 산업이다. 더구나 개발도상국경제의 농업은 상황적응적(狀況適應的)인 타산업보다 효율이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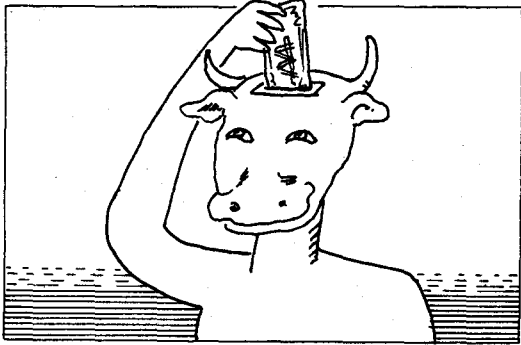
진다하여 소외당하기 쉽다. 이러한 농업의 입장을 단기적으로만 파악하다 보면 농업발전의 패턴에 금이가고 나중에는 농업문제가 경제사회 및 정치에도 커다란 부담을 주게 된다. 따라서 농업은 합리적 발전을 전제로 장기적 기본전략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산업이 장기적 발전을 꾀하는 데는 품목별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한 단체적활동에 의존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자기산업을 스스로가 육성발전시킨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며 생산자 각자가 그 활동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므로 자조금을 부담하여 어떤 기간적(基幹的)인 힘을 발휘하게하는 것이다. 이렇게 모인 단체이야말로 목적하는 바의 이익성취를 할 수 있고 산업의 장래를 위한 일도 해낼수 있는 것이다.

농업생산자는 농장안의 일에만 전념할 수 있어야 한다. 농장밖의 일은 누군가가 처리해주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조성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농장밖의 일을 남에게 맡기기 위하여 자조금이 필요하다. 그리하여 자조금은 산업의 장기적 발전을 주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3. 성 격

자조금은 생산자가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를 풀어가기 위하여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스스로가 부담하는 자금이므로 어디까지나 이익집단의 회비와 같은 성격을 띠고 있다. 다만 공평, 용이하게 수금하고 공개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생산자의 결의를 거쳐 입법화하는 특수 기금인 것이다. 따라서 자조금은 그 목적에 있어서는 산업구성원의 자체자금이면서 제도면에서는 법정기금(法定基金)(예: 畜産振興基金)과 유사한 성격도 갖고 있다. 한국에는 아직 이러한 생산자의 제도기금(制度基金)이 없어 종래의 유명무실한 각종 단체의 자금과 혼동하기 쉽다. 그래서 자조금의 성격이 다른 기금이나 회비와 어떻게 다른가를 분명히 밝혀보고자 한다.

1) 무임편승자(無賃便乘者)의 배제(排除)

농업생산자나 근로소득자와 같이 개별적으로 경제적열위(經濟的劣位)에 있는 다수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는 각종 정부적배려는 물론 구성원 스스로의 자구책이 강구된다. 특히 농업생산자의 경우는 협동조합이나 협회의 조직을 통하여 경제적지위의 향상과 단체교섭력(團體交涉力)의 증진을 획책한다. 그런데 여기서 언제나 제기되는것이 무임편승자의 문제이다. 협동조합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낮은 참여도와 협회 회비징수의 곤란성은 곧 무임편승 문제의 핵심이라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자조금제도는 이러한 불참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쓰고 있다. 즉 부과와 징수를 의무화함으로써 무임편승자를 없애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비용조달에 있어 구성된 모두가 참여하여 공평한 부담원칙에 따르도록하는 것이다.

2) 법정자진부과(法定自進賦課)

자조금은 생산자가 결의하여 입법, 자진 부과하는 것이다. 국가의 재정확보를 위하여 국민의 납세를 의무화하듯이 이익집단의 특정활동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집단구성원의 비용부담을 자진의무화하는 법정부과금 또는 해당금이 바로 자조금인 것이다.

국가단위에서 강제부과하는 것은 조세이고 산업단위에서 자진부담하는 것은 자조금이다. 따라서 자조금은 산업사회의 이익집단이 민주적절차에 따라 자진부과하는 목적기금으로 종래 개념의 찬조금 또는 잡부과금과도 그 성격이 전연 다른 것이다.

3) 수익자(受益者)의 부담

법률상의 수익자 부담이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공익을 위한 어느 특정사업의 비용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수익자에 지우는 부담을 말한다. 자조금도 산업의 공동사업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때의 수익자는 그 산업의 구성원이며 수익의 크기는 구성원 각자의 사업량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다.

자조금은 수익자 부담이란 시각에서 이익에 대한 대상(代償)인 요금(料金), 서비스에 대한 보상(補償)인 수수료(手數料), 친목유지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비의 성격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자조금은 특수목적을 위한 수익자 부담 성격의 자금이므로 특정용도(特定用途)이외의 사용은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또는 부담자인 생산자는 기금관리에 적극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사용내역(使用內譯)은 부담자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자조금의 부과방법은 거래액에 대한 비율 이외에 거래 단위당으로 분담하고 생산비나 수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가 적당

4) 극소액 분담(極少額 分擔)

자조금은 수익비례원칙(受益比例原則)에 따라 극소한 금액을 수익자가 분담하는 것을 특징으로하고 있다. 비농업부분의 법정자조금은 상당히 높은 비율을 부과하나 농업부분의 자조금 거래액의 0.1~0.5%와 같이 적은 비용을 적용시켜 생산비나 수익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통례이다.

자조금의 부과대상은 생산물(판매) 또는 생산자재(구입)이다. 전자는 어느 물량 이상의 판매시장이 체계화되어 있어야하고 후자는 모든 생산자가 구입하는 자재이면서 구입시장이 조직화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부과방법에 있어서는 거래액에 대한 비율 이외에 거래단위당(頭당, 首당, kg 당, 등) 얼마씩 분담시킬 수 있다.

자조금제도가 개별생산자에게 어느 정도의 경제적부담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소비자가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하는 문제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0.5%미만의 부과라고 하면 농업특유의 자재 및 생산자가격 변화의 추세로 보아 생산자와 소비자에 주는 부담이란 거의 의식할 수 없는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이것이 전국의 생산자가 부담하도록 제도화했을 때 산업발전기금의 역할을 할 만큼 큰 돈이 모아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5) 거래시점에서 자동공제(自動控除)

자조금은 조직화된 거래(판매 또는 구매)시점에서 공제 수금 된다. 소, 돼지는 도축장, 닭

은 도계장, 계란은 집란장, 우유는 집유장이 수금지점이고 배합사료라면 공장 또는 농장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사업장은 근로소득이 원천징수의무(源泉徵收義務)와 같이 법에 의한 수금의무가 주어진다.

이와 같이 자조금은 일단 제도화되면 자동적으로 공제, 수금된다. 이렇게하여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구성원은 모두 참여하여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사단법인인 협회가 그 산업의 공동문제를 풀기 위한 비용을 연출하고자 회비를 부과해 보지만 전국에 산재해있는 다수의 회원으로부터 수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경험을 너무나 많이 갖고 있다. 자조금은 이러한 불합리를 저절로 풀어주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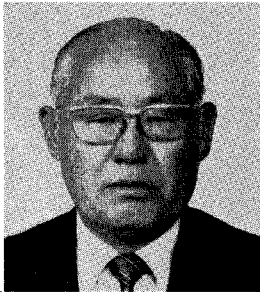
6) 생산자단체에 의한 관리

특정 이익집단의 자조금은, 그 집단을 대표하는 단체가 관리하게 된다. 법으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게도 하나 대개의 경우는 당해산업의 생산자단체에게 맡긴다. 여기서 말하는 생산자단체란 산업의 일부생산자가 특정 경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직하는 협동조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산업을 총괄대변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예: 협회, 연합회, 협의회 등) 즉 협동조합 조합원을 포함하는 산업구성원 모두의 단체를 지칭한다.

사업장에서 수금된 자조금은 법적절차에 따라 이 지정단체로 보내진다. 이 단체에는 이사회를 두어 자조금에 대한 기본방침을 결정하고 지정단체로 하여금 사용목적과 범위내에서 운용하게 한다. 또 산업기금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운용결과를 공개하고 정부에 보고하도록 한다.

다음은 자조금제도에 대한 의견을 양측에게 들어본다.

“어려운 난관을 이겨나가고 생산자 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하며 방법은 납유량에 비례해 유대에서 공제하는 것이 바람직”



최 인 식
(이 사)

“우리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 나가야 하며 규모는 10두 이상의 농가 방법은 유업체 대금지불시 납부가 바람직”

자조금제도에 대한 연구보고서 책자를 통하여 살펴보건대 조속히 실현되기를 바라는마음 간절하다. 이제까지 생산자의 권익보호내지 자구책강구를하여 협회가 설립운영되어왔고 그 운영경비는 소액의 회원균등회비에 의존하고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농업은 지난날 많은 어려움속에서도 그런대로 현재까지 유망사업으로 유지발전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 불길한마음을 진정할길이없다. 날이갈수록 원유가 증산돼 소비불균형과 보호무역추세에따른 수입개방압력, 유제품의 계속적인 대량수입, 외국원료를 주로하는 치즈공장 국내합작설립등 일일이 열거할수 없을만치 생존을 위협하는 많은 문제들이 파도와같이 밀어닥치고있음을 실감할수있다. 우리는 이제 살아남기 위하여는정책의존이나 내가 앓해도 남들이 적절히 해결하여주겠거니 하는 구태를 탈피하고 슬기로운 자구책이 조속히 강구되어야 할것이다. 이제까지 낙농가의 협회가입상상황을보건대 4만여가구중 1만7천여가구로서 반수에다 미달하니 참여의식이 얼마나 부족한가를 엿볼수있다. 협회운영은 두말할것없이 회비로서 충당하고있는 처지인데 소액의 회비내기가 아까와서 무임편승하려는사람이 이와같이 많은 상황하에서는 회장이하 임원들이 혼신의 노력과 봉사를하여도 소기의 성과는 거두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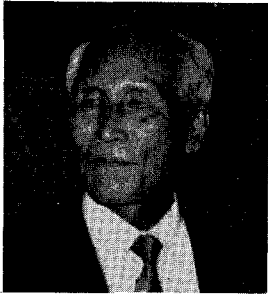
우리가 난관을 이겨내려면 다같이 참여하여 뭉쳐야하고 따라서 자기희생을 감수할줄아는 자각이 요구되는바이나 이제 자발적인 참여를 더이상 기다릴 시간이없다고 생각된다. 자조금제도는 수혜자가 전 생산자이므로 생산자모두가 의무적으로 참여토록 법제화하여 기금은 납유량에 비례하여 유대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본 자조금제도에대하여 우리축산업계의 전문가들께서 선진국의 시행배경및 운영실상 문제점등을 세밀하게 현지확인하고 분석한결과 자조금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도입방안연구와 논의가 진행되고있음은 지극히 다행한일이라고 생각한다.

수요를 넘어선 우유생산량의 조절, 외국유제품의 수입방지등 여러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낙농업계를 대표하는 낙농유우협회는 농가 4만여호중 그 반수도 안되는 회원이 년 1만원 정도의 회비로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다. 모든 문제엔 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고식(姑息)책으로서 일이 잘 진행되기를 바랄 수 없다.

액수도 늘려야하고 받는 방법도 개선 되어야 하고, 공짜놀이도 없어야 한다. 이제 우리는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지 관이나 협동조합에 의지할때가 아니다. 그러므로 자조금제도는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낙농은 모든 조건이 자조금제도를 가장 손쉽게 도입할 수 있게 되



진 두 현
(감 사)

“기금의 사용처 목적 등에 대해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며 시행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어있다. 첫째 생산자대표로서 협회가 있어 일을 주관할수 있고 또 유업체에서 대금지불때 자조금을 걷을수 있으니 유가공업체에서 협조하면 일은 순조롭게 케도에 올릴수 있을 것이다. 유가공업체와 생산자인 낙농가는 집유과정에 있어 이해가 상반되는 면이 없지 않지만 국내 낙농의 발전과 유가공 업체의 발전이라는 대체적인 관점에서는 동일 운명체이니 협조가 잘 이룩될것으로 본다. 다만 영세 낙농가(10두미만의 농가는 2만8천호로 전체낙농가의 66%, 10두미만의 총두수는 13만7천두로 전체두수의 31%, 86년말 기준)는 개시 초보 또는 시험사육이 아니면 폐업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10두 이상 정도로 선을 정했으면 좋겠다. 참여인원을 줄이는것은 동의(同意)체를 구성하는데도 좋을것이다.

입법사항은 시간이 걸릴것이므로 서둘러 주었으면 좋겠다.

각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낙우회 또는 협회지부회의 관련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자조금을 받은 뒤에 또 낙우회비를 받을수는 없으니까 자조금중 일부를 시·군단위의 낙우회로 환원 시켜야 될 줄안다. 가장 합리적인 길이 흰히 열려있다. 신중한 것은 좋으나 좌고우면(左顧右盼)할 필요는 없다.

우리축산인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도 아니며 가진것이 넉넉치도 못하고 사회의 모든 여건에 훌륭히 대응할만한 조건이 갖추어진것도 아니며 단, 성실과 근면으로써 착실히 꿈을 키워가는 산업의 역군들이다. 낙농을 시작하면서 소입식때 축산진흥기금으로 상당히 많은 액수를 납부했고 유대에서도 얼마씩의 기금을 공제했던것으로 알고있다. 그 기금이 우리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크게는 주지 못하였으나 축산인을 위해서 적절히 이용되었으리라 믿고 싶으나 의심점이 너무나 많고 다수낙농인들이 더 자세히 알았으면 하나, 누구하나 시원한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한심스럽기 그지없다. 축산진흥기금과 같은 후유증이 따르지나 않은가 싶어서 여러방면으로 생각도 해 보았다.

나하나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험했기때문에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조합과 협회를 구성하여 보다 많은 일들을하고 있다. 목적이 있으면 그에 따르는 경제가 뒷받침 되어야하고 일을 추진하는데 인력이 필요로 하므로 그분들에게 충분하지는 못하나 보수를 지불하여야 할 의무가 있기때문에 자조금제도에 반대할 의사가 없다. 이 자조금제도를 만드는데 이기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축산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홍보가 필요하다. 미국에서는 이제도를 이행하면서 성공적이라는 것도 책자를 통하여 어느정도는 알고있으나 우리가 이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우리실정에 맞도록 잘 다듬어서 축산인 한사람도 빠짐없이 이제도에 적극참여할 수 있게 해 주기바란다.

사회가 불안하고 질서가 어려운 이때에 이제도를 시행하려면 상당기간 동안 어려움이 따르리라 믿으며 고충도 크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축산발전 을 위하여 꾸준히 밀고 나아가는 것은 잘한일이며 선진축산국이 되는 초석이 되리라 믿는다. 자조금이란 생산자가 산업의 공통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가기위하여 그 비용을 스스로 납부하는 제도이며 낙농육우협회비 와 같이 수급하기어렵고 축산인 전체가 참여하는데 미진함이 있으므로 이 제도를 추진해 나아감에있어 자신으로는 적극 찬성을 한다. 축산업계의 주인은 축산물생산자이며 그 산업의 발전은 축산인에의해 주도되어야하고 자조금제도를 시행하려면 축산업은 관주도에서 민주도로하고 생산과 유통, 가공, 소비에 균형을 맞추어 생산자나 소비자의 권익에 역점을두어 실천해 나갈수 있는 기틀을 이번기회에 마련하자, 낙농, 양돈, 양계, 육우 분야별로 구분해서 추진한다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생각해보면서 자 조금제도는 모든 축산인이 참여하여 전국규모로 시행될때 성과가 크므로 생산자 단체별로 자조금제도 추진위원회를 결성하여 이 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해나아가감이 바람직스럽지 않은가 합니다. 축산이 국제경쟁에서 이겨 나아가려면 속한 정보와 그에 대응할 수 있는 구성체가 이루어져야 하며 먼저 생산자가 자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해야합니다.



채 윤 석
순천승주지회

지난날과 같이 축산인이 모든문제를 국가에서나 협동조합에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은 버려야하고 자조금제도는 자기부담이 따른다는 점에서 이제 도를 기피해서도 안되거니와 이번기회를 통하여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 한 자조금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축산인의 대변기구가 되며 우리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자.

“무임승차의 배 격과 낙농육우분야 의 강력한 이익 집 단이 형성되어 한 국축산의 지속발전 이란 거시적 안목 에서 자조금제도의 필요성은 당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고 하였다. 자조의욕이 없는 사람에게 는 도와줄 마음이 생길수없다는 뜻과, 자립정신이 없는사람에게는 도와 주어야 성공할수 없다는 의미도 담겨진 말일것이며 하기야 남이 아무리 도와준다고 하더라도 자기스스로가 자신을 생각하는 정도에는 미치지 못 할진데, 오늘날의 복잡한 기능사회, 경쟁사회에서 지금같은 정책적 배려 정도가 과연 우리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수있을까하고 생각치 않을수없게 된다.

소값파동과, 분유적체라는 쓰라린 현실을 겪으면서, 자연재해가 아닌 인위적 정책에 인한 재해임을 지적하고 있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의 뜻을 모아 정책에 반영하고 생업을 보호할수있는 강력한 자구적 집단이 이루어 지지 못한데서 빚어진 결과였다고 보아야 할것이다.

공장지역 낙우회장과 본 협회의 임원직을 맡아 오면서 항상 아쉽게 생 각되는점은, 조직의 직, 간접적 혜택을 의식하기는 커녕, 참여를 외면하 거나 이합집산을 거듭하며 권리에서 오히려 큰소리나 치는 무임편승자의

행포인것이다. 그러기에 어떻게하면 제도적으로 책임과 혜택을 모두같이 가지게 할수는 없을까고 생각해오던 터인데, 선진국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자조금제도」의 거론은 쌍수를 들어 환영할일이라 여겨진다.

생산만하면 좋은값으로 팔렸고 문제만 생기면 정부가 도와줄것으로 믿었던 초기적 보호시대는 이미 지났고, 국내외적 개방체제에서 고도산업사회에 적응하며 생존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이나 믿고, 한국적 협동조합의 안정대책에 의존만으로는 더욱 어려운 국면을 당할것이 명약관화한 사실이기에 구성원 모두가 조금씩 자조적으로 부담하되 전국적으로 큰 돈이 모일수있어서 낙농육우분야의 강력한 이익집단이 형성되어 효율적인 자조활동이 반드시 이루어질수 있을것으로 확신되는 자조금제도에기에 우리의 안정적 생업보호와 한국축산의 지속적발전이란 거시적 안목에서 전 생산자의 참여는 물론이거니와 관계당국 관련업체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것으로 믿는다.

낙농육우업계가 지극히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음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인식을 같이한다고 하더라도, 본 제도와 같은 민주적 이익집단의 공동활동을 해본 경험이없는 풍토에서, 제도화과정과 시행이되기까지는 많은 난제들이 가로놓이리라 예상되나 기왕에 구성되어있는 사단법인체인 협회들이 합심해서 신뢰를 바탕으로하여 노력한다면 능히 이루어질수 있으리라 믿으며 내가 살아남을 수있는 길임을 깨닫고 우리모두 긍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다.



박 재 호
(삼주 지회장)

회보지의 발행이 결간 되었음을 사과드립니다. 회보지의 내용을 충실하며 페이지 증면 등 회원과 독자여러분께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면모를 새롭게 하고자 편집위원 제도를 도입, 편집위원을 위촉하여 위원들의 고견을 듣기로 하는 등의 과정에서 인쇄인도 변경되었습니다.

이런 대외적인 사정으로 5월은 결간되었으며 6월호와 7월호는 합본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알찬 협회지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오니 회원, 그리고 독자 여러분들의 아낌 없는 충고와 지도 편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